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의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개정)</p> <p>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물품관리체계”란 보세공장(장외작업 포함)에서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에 대한 반출입사항(예 :</p>	<p>제1조(목적) ----- 「관세법」 ----- ----- -----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 ----- ('13.12., '22.11. --)</p> <p>제3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예:--</p>	<p>○ 문장 정비</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기초재고, 반입, 반출, 기말재고)과 생산공정에서의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의 <u>수불사항(예 : 기초재고, 투입, 생산, 재공품, 기말재고)</u>이 장부 또는 자료전달 및 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p>	<p>----- ----- ----- <u>출납사항(예:</u> ----- ----- ----- ----- ----- ----- ----- ----- ----- ----- ----- ----- ----- -----</p>	
<p>8. “자율관리보세공장“이란 법 제164조에 따라 세관장이 「<u>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u>」 제3</p>	<p>8. ----- ----- 「<u>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u>」</p>	<p>○ 인용 고시명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조제2호의 “<u>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u>”으로 지정한 보세공장을 말한다.</p> <p>제4조(특허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p> <p>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포장 <u>기타</u>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p> <p>2. (생략)</p>	<p>제3조제2호 - <u>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u>-----.</p> <p>제4조(특허대상) ----- ----- ----- -----.</p> <p>1. ----- ----- ----- ----- ----- ----- <u>또는 그 밖에</u> ----- -----</p> <p>2.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특허요건) ① <u>시설요건</u> 보세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u>조건</u>,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p> <p>1. 제조·<u>가공</u> 그 밖의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의 비치</p> <p>2. (생략)</p> <p>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u>기타</u>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p> <p>4. ~ 6. (생략)</p>	<p>제5조(특허요건) ① <u>보세공장은</u> ----- ----- ----- <u>조건</u> 등이 -----.</p> <p>1. ----- <u>가공 또는 그 밖의</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그 밖의</u> ----- ----- -----</p> <p>4. ~ 6. (현행과 같음)</p>	<p>○ 문장 정비</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7.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공장의 경우는 위험물취급요령 및 그 밖의 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타)에서 정한 시설의 완비 및 취급자격자의 <u>상근과</u> 위험물품 보세공장 특허지역으로서의 적합한 지역 ('05.1. 인용법령개정)</p> <p>② <u>(관리요건)</u> 보세공장은 보세화물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 요건</u>을 갖추어야 한다. ('12.6. 개정)</p> <p>1.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u>한다</u>.</p>	<p>7. ----- ----- ----- 「<u>화학물질관리법</u>」 ----- ----- ----- <u>등</u> ----- ----- <u>상시 근무와</u> ----- ----- ----- ('05.1., '22.11. ----- -----)</p> <p>② <u>보세공장</u> ----- ----- <u>각 호</u> ----- <u>의 관리요건</u> -----.</p> <p>1. ----- ----- <u>하며, 제7조</u> -----</p>	<p>○ 인용 법령 개정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문장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단일보세공장의 경우 각 공장별 보세사 채용의무</p>

현행	개정안	비고
<p data-bbox="271 300 499 341">&lt;후단 신설&gt;</p> <p data-bbox="241 571 539 612">2. ~ 4. (생략)</p> <p data-bbox="241 639 445 681">③ (생략)</p> <p data-bbox="210 708 853 1153">제6조(설치·운영의 특허)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p> <p data-bbox="241 1179 819 1220">1. 민원인 제출서류 ('07.12. 개정)</p>	<p data-bbox="943 300 1525 544"><u>제1항에 따른 단일보세공장의 경우 각 공장별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22.11. 후단 신설)</u></p> <p data-bbox="913 571 1301 612">2. ~ 4. (현행과 같음)</p> <p data-bbox="913 639 1211 681">③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82 708 1520 1153">제6조(설치·운영의 특허) ① ----- ----- ----- ----- ----- ----- -----.</p> <p data-bbox="913 1179 1525 1286">1. ----- ('07.12., '22.11. --)</p>	<p data-bbox="1592 300 1704 341">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가. ~ 라. (생략)</p> <p>마.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p> <p>바. (생략)</p> <p>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생략)</p> <p>나. 법 제175조에 따른 운영인·임원 (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p> <p>다. · 라. (생략)</p> <p>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p> <p>바.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한정한다 -----</p> <p>다. · 라. (현행과 같음)</p> <p>② -----</p>	<p>○ 인용법 조항 수정</p> <p>○ 조문 정비</p> <p>○ 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접수한 후 특허대상, <u>특허요건(시설요건, 관리요건)</u> 및 특허제한 사유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2.6. 개정)</p> <p>③ ~ ⑤ (생략)</p> <p>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① 2 <u>개 이상</u>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u>공장간</u>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p>	<p>----- <u>특허요건</u></p> <p>-----</p> <p>-----</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① 2 <u>개 이상</u> -----</p> <p>----- <u>공장 간</u></p> <p>-----</p> <p>-----</p> <p>-----</p> <p>-----</p> <p>-----</p> <p>-----</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u>관계세관</u>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 ('13.12., '18.12. 개정)</p> <p>1. (생략)</p> <p>2. 기존 보세공장에서부터 <u>10Km 기준거리</u>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은 세관감시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u>기준거리의 1/2범위 내에서 그 거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u> ('18.12. 신설)</p> <p>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p>	<p>----- ----- ----- <u>관할지세관장</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직선거리 15Km</u> ----- ----- ----- <u>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서는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u> ----- - 신설, '22.11. 개정-</p> <p>② ----- 「수출입 안전관리 우</p>	<p>○ 단일보세공장 거리기준 요건 완화</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 (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 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04.3. 삭제, ’06.6. 신설, ’12.6. 개정)</p>	<p>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  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  에 관한 훈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법규수행  능력 우수업체”-----  -----  -----  -----  -----  -----  -----  -----  -----  -----</p>	

현행	개정안	비고
<p>1. <u>보관창고</u> :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p> <p>2. <u>물품관리</u> :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p> <p><u>&lt;신 설&gt;</u></p>	<p>1. <u>보관창고</u>: ----- ----- -----</p> <p>2. <u>물품관리</u>: ----- ----- -----</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에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세관장은 보관창고 관할지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는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1</u></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동일세관 관할구역 외에도 보세공장과 근거리에 보관창고 증설 허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특허의 제한)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u>감안하여</u> 설치·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0조(특허의 갱신)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05.1. 삭제</u></p>	<p><u>1. 신설</u></p> <p>제8조(특허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고려하여</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특허의 갱신) ① ----- ----- ----- ----- ----- -----.</p> <p>1. <u>&lt;삭제&gt; ('05.1.)</u></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2. (생략)</p> <p>3. 제6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서류 ('05.1. 신설, '07.12. 개정)</p> <p>4.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의 서류(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5.1. 신설, '07.12. 개정)</p> <p>② · ③ (생략)</p> <p>제11조(특허의 상실 및 승계) ① (생략)</p> <p>②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보세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p>	<p>2. (현행과 같음)</p> <p>3. 제6조제1항제1호라목 ----- -----</p> <p>4. 제6조제1항제1호바목-----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특허의 상실 및 승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5.1. 신설)</p> <p>1. (생략)</p> <p>2. 제6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07.12. 개정)</p> <p>3.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제6조제1항제1호나목-----</p> <p>-----</p> <p>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1. (생략)</p> <p>2.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u>반송된</u> 물품 ('09.8. 개정)</p> <p>3. (생략)</p> <p>4.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u>선박(항공기)</u>에 적재하고자 하는 <u>선(기)용품</u>(한급대상물품은 제외)</p> <p>5. ~ 11. (생략)</p> <p><u>&lt;신설&gt;</u></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반송된 물품</u> <u>과 하자보수, 성능개선 등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재반입되는</u> --- 개정, '22.11 개정-</p> <p>3. (현행과 같음)</p> <p>4. ----- - <u>선박 또는 항공기</u>----- - <u>선박용품·항공기용품</u>----- -----</p> <p>5. ~ 11. (현행과 같음)</p> <p>12. <u>해당 보세공장 생산품과 함께 보관·관리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법</u></p>	<p>○ 하자보수 및 성능개선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p> <p>○ 관세법 개정사항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404) 반영</p> <p>○ 보세공장 생산품과 함께 재고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생략)</p> <p>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 ③ (생략)</p> <p>④ 운영인은 잉여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 <u>반출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u>한다.</u> ('18.12. 신설)</p>	<p><u>인</u> <u>생산품</u> ('22.11. 신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반출하려는</u> ----- ----- ----- -- <u>하며, 반출신고서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 6서식의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 정정·취하신청(승인)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18.1</p>	<p>도록 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원</p> <p>○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서의 정정 및 취하절차를 마련하여 보세공장 운영인 편의 제고</p>



현행	개정안	비고
<p>1. ~ 3. (생략)</p> <p>4. <u>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u>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u>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u>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p> <p>⑦·⑧ (생략)</p> <p>⑨ <u>전산으로 반입신고</u>를 하려는 운</p>	<p><u>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u>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05.1., '06.6., '09.8., '12.6., '22.11. 개정)</p> <p>1. ~ 3. (현행과 같음)</p> <p>4. &lt;삭제&gt; ('22.11.)</p> <p>⑦·⑧ (현행과 같음)</p> <p>⑨ &lt;삭제&gt; ('22.11.)</p>	<p>○ 문장 정비</p> <p>○ 전산시스템 구비는 보세공</p>

현행	개정안	비고
<p><u>영인은 수입화물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영세업체 등에 대하여는 세관의 업무량, 업체의 화물 반출입 건수 등을 감안하여 세관의 전산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u></p> <p>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4.3. 개정)</p> <p>1. ~ 3. (생략)</p> <p>4. <u>생산중단</u>, <u>제조품목의 사양변경</u> 또는 <u>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u></p>	<p>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생산계획 변경</u>----- -----</p>	<p>장 특허요건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규정 정비</p> <p>○일시 생산중단에 따른 잉여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p>

현행	개정안	비고
<p>잉여 원재료</p> <p>5. 계약내용과 다른 원재료(다만, 사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18.12. 신설)</p> <p>&lt;신설&gt;</p> <p>②·③ (생략)</p> <p>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정정 등의</p>	<p>----- 원재료 (’22.11. 개정)</p> <p>5. ----- 원재료. 다만, ----- ----- ----- 한한다. (’18.12. -----)</p> <p>6. 임가공을 의뢰한 해외 공급자가 계약수량 변경, 품질검사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원재료 (’22.11. 신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 ----- ----- -----</p>	<p>허용</p> <p>○ 조문 정비</p> <p>○ 임가공 거래형태 반영 등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p> <p>○ 오타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에 따르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1절 및 <u>제4절에</u> 따라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04.3., '05.1., '18.10. 개정)</p> <p>② (생략)</p> <p>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1. ~ 5. (생략)</p>	<p>----- ----- ----- <u>제4절에</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u>제44조</u> 규정에 의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법 <u>제178조 제3항</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3. 신설)</p> <p>⑤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u>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u>」 제18조를 준용한다. ('11.3. 신설)</p> <p>제17조(물품의 장치 및 관리) ①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장치</p>	<p>6. ----- ----- <u>제44조에 따라</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178조제3항</u> ----- -----</p> <p>⑤ ----- <u>「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u> -----</p> <p>제17조(물품의 장치 및 관리) ① ---- ----- -----</p>	<p>○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띄어쓰기 오류 수정</p> <p>○인용 고시명 띄어쓰기 수정</p> <p>○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사용장소에 장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p> <p>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한 경우 주공장 관할지세관(특허세관)장은 공장 및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세공장을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감시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p>	<p>-----. -----. -----. -----. -----. -----. <u>제12조제2항</u>----- ----- -----.  <u>② 제7조제1항</u>----- ----- -----.</p>	<p style="text-align: center;">○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할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운영실태 등의 업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③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부터 1년으로 하며, 물품의 관리는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p> <p>제17조의2(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 ① 운영인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p>	<p>----- -----.</p> <p>③ ----- ----- -----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p> <p>제17조의2(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 ① -----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물품과 반입된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재공품 및 제품 ----- ----- -----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보세공장에 반입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장외일시 장치(직반입)를 허용하고 장외일시장치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원</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의 장소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u>20.7.</u> 개정)</p> <p>②·③ (생략)</p> <p>④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u>같음한다.</u></p> <p>⑤·⑥ (생략)</p> <p>⑦ 장외일시장치장소가 다른 세관의</p>	<p>-----</p> <p>-----</p> <p>----- . (<u>20.7.</u>, <u>’22.11.</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u>하며, 허가받은 물품을 장외장치장으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22.11.</u> 개정)</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p>	<p>○ 장외일시장치 장소로의 물품 직접 반입절차 규정</p> <p>○ 띄어쓰기 오류 및 준용조</p>

현행	개정안	비고
<p>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22조 제10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05.1. 전문 신설)</p> <p>⑧ (생략)</p> <p>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 필요에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1.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p> <p>2. ~ 4. (생략)</p> <p>5. 「수산물질병관리법」</p> <p>6. 「가축전염병예방법」</p>	<p>----- 제22조제10항</p> <p>-- <u>제11항</u>-----</p> <p><u>신설, '22.11. 개정-</u></p> <p>⑧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수산물질병 관리법</u>」</p> <p>6. 「<u>가축전염병 예방법</u>」</p>	<p>항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7.·8. (생략)</p> <p>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p> <p>10. ~ 13.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며, 사용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u>세관특수청인</u>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u>'13.12. 개정</u>)</p> <p>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p>	<p>7.·8. (현행과 같음)</p> <p>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p> <p>10. ~ 13. (현행과 같음)</p> <p>③ ----- ----- <u>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u> <u>따르며,</u> ----- ----- <u>세관특수청인</u>----- ----- ----- ----- ----- ----- <u>( '13.12., '22.11. ---</u></p> <p>1. ----- ----- <u>경우:</u></p>	<p>○인용법령명 정비</p> <p>○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사용신고서에 <u>세관 특수청인</u>을 직접 찍어서 교부</p> <p>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u>경우</u>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u>[별표 3]</u>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서 교부</p> <p>④ (생략)</p> <p>⑤ 운영인은 사용신고하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중 <u>제12조 제3항 제7호</u> 및 <u>제8호</u>의 물품이 있는 때에는 <u>란</u>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0</p>	<p>----- <u>세관특수청인</u>-----</p> <p>-----</p> <p>2. -----</p> <p>-----</p> <p>-----</p> <p>-----</p> <p><u>경우:</u> -----</p> <p>-----</p> <p>----- <u>별표 3</u>-----</p> <p>-----</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u>제12조제3항제7호</u>-----</p> <p>-----</p> <p>-----</p>	<p>○ 띄어쓰기 오류 및 문장부호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5.1. 신설)</p> <p>⑥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06.6. 신설, '12.6., '20.7. 개정)</p> <p>⑦ (생략)</p> <p>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① (생략)</p>	<p>-----</p> <p>⑥ -----</p> <p>-----</p> <p>-----</p> <p>-----</p> <p>-----</p> <p>-----</p> <p>-----</p> <p>-----</p> <p><u>그렇지 않다.</u> -----</p> <p>-----</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u>원재료의 품목번호(HS K)</u>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16.10. 신설, ’20.7. 개정)</p> <p><u>제20조(P/L신고대상업체 및 P/L신고대상물품 지정)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서류제출없이 전자서류에 의하여 할 경우(P/L신고;Paperless신</u></p>	<p>② ----- ----- ----- ----- <u>물품</u> ----- ----- ----- ----- ----- ----- <u>그렇지 않다.</u> -----20.7., <u>’22.11</u> -----</p> <p><u>제20조 &lt;삭 제&gt; (’22.11.)</u></p>	<p>○ 원재료에 한정된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혜택을 보세공장 물품 전체로 확대</p> <p>○ 사문화 규정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고)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p> <p>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①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u>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u> (별지 제5호서식)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p> <p>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u>제27조 제2항</u>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u>원재료실</u></p>	<p>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① --- ----- ----- <u>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u>----- ----- ----- ----- ----- ----- ----- ----- -----</p> <p>② ----- ----- <u>제27조제2항</u>----- ----- <u>별지</u>-----</p>	<p>○ 조문 정비</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05.1. 개정)</p> <p>③ ~ ⑤ (생략)</p> <p>제22조(장외작업) ① (생략)</p> <p>②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내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p> <p>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p>	<p>제6호서식의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p> <p>-----</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장외작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1. -----</p> <p>-----</p> <p>-----</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u>경우</u> : 1년</p> <p>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인 <u>경우</u> : 2년 ('18.1.2. 개정)</p> <p>③ ~ ⑤ (생략)</p> <p>⑥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아 보세작업한 물품과 그 잉여물품은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수입신고, <u>양수도(동일 법인의 보세공장간 이동을 포함한다)·폐기신청</u>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한 경우에</p>	<p>-----</p> <p>----- <u>경우</u>: ----</p> <p>2. -----</p> <p>----- <u>경우</u>: -----</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p> <p>-----</p> <p>-----</p> <p><u>양수도, 다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의 반출신고, 폐기신청, 장외일시장치신청</u> -----</p> <p>-----</p> <p>-----</p>	<p>○ 장외작업장 생산품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장치장, 다른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으로 직접 이동 허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는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은 장외작업 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u>'04.3. 개정</u>)</p> <p>⑦ (생략)</p> <p>⑧ 운영인은 <u>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 (<u>'05.1. 신설, '06.6., '18.12., '20.7. 개정</u>)</p>	<p>----- ----- ----- ----- <u>-----. ('04.3., '22.11.-----</u></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 <u>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기간이 끝나</u> <u>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u> <u>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장외작업 완료</u> <u>보고서를 제출하여야</u> ----. ----- ----- ----- ----- -----</p>	<p>○ 장외작업 완료보고 기한을 여유있게 규정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신고부담 완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⑨ ~ ⑪ (생략)</p> <p>⑫ 운영인은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의 운송 시에는 보세 운송등록 차량,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p>제23조(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① 장외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인은 제22조에 따른</p>	<p>-20.7., '22.11-----</p> <p>⑨ ~ ⑪ (현행과 같음)</p> <p>⑫ -----</p> <p>-----</p> <p>-----</p> <p>-----</p> <p>----. <u>이 때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운영인은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2.11. 후단 신설)</u></p> <p>제23조(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① -----</p> <p>-----</p> <p>-----</p>	<p>○보세운송차량이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실무절차 규정</p> <p>○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청 시 해당 품목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u>장외작업허가의 경우에는</u> 신청서 우측 상단에 “<u>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u>”( [별표 2] )의 <u>고무인을 날인 신청하여</u>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3, '06.6. 개정)</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6.6. 개정)</p> <p>1. (생략)</p>	<p>----- ----- ----- <u>장외작업허가신청의 경우 운영인은</u> ----- ----- <u>별표 2의 고무도장을 날인하여</u> ----- ----- -----</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2. <u>적하목록</u> 또는 B/L(AWB 포함) 사본</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24조(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①·② (생략)</p> <p>③ 세관장은 제조공정상 한 곳 이상의 다른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여 입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p>	<p>2. <u>적재화물목록</u> ----- -----</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p>	<p>○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p> <p>○ 오자(誤字)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7호의3서식)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물품은 <u>장외장업장과</u>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에 직접 반입할 수 있다. ('18.12. 신설, '20.7. 후단 신설)</p> <p>④·⑤ (생략)</p> <p>⑥ 운영인이 최초의 보세작업을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작업을 통하여 <u>수행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u>제23조 제1항</u>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자유무역지역은 <u>입주기업체</u>)가 하여야 한다. ('13.12. 개정)</p> <p>⑦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p>	<p>----- . -----</p> <p>----- <u>장외작업장</u> -----</p> <p>-----</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 <u>수행하려는</u> -----</p> <p>----- <u>제23조제1항</u> -----</p> <p>----- . -----</p> <p>-----</p> <p>----- <u>입주기업체</u>)이 -----</p> <p>-----</p> <p>⑦ -----</p>	<p></p> <p></p> <p></p> <p></p> <p></p> <p>○오자(誤字) 수정</p> <p></p> <p></p> <p></p> <p></p> <p></p> <p></p> <p></p> <p>○장외일시장치장소 등으로</p>

현행	개정안	비고
<p>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 등을 다른 보세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u>양수도 또는 폐기 처분</u> 등을 할 수 있다.</p> <p>⑧·⑨ (생략)</p> <p>제25조(보수작업) ① <u>제1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물품의 보수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 HS상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05.1. 개정)</u></p> <p>1. ~ 4. (생략)</p>	<p>----- ----- ----- <u>양수도, 다른 보세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의 반출신고, 폐기신청, 장외일시 장치신청</u> ----- 있다. ('22.11. 개정)</p> <p>⑧·⑨ (현행과 같음)</p> <p>제25조(보수작업) ① <u>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며, HS상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05.1., '22.11. 개정)</u></p> <p>1. ~ 4. (현행과 같음)</p>	<p>물품 이동 허용</p> <p>○ 제12조제3항(반입대상) 개정에 따라 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9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u>재수출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p>	<p>② ----- ----- ----- ----- ----- ----- ----- ----- ----- -----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③ 제2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별지 제10호서식)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와 동시에 <u>수출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수출신고</p>	<p>③ ----- ----- ----- ----- ----- ----- ----- ----- ----- -----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서에 보수작업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완료보고를 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u>수출후</u> 재반입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잉여물품으로 처리하고 대체품을 수출할 수 있다.</p> <p>제26조(내국작업) ① ~ ④ (생략)</p> <p>⑤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별지 제12호서식)를</p>	<p>----- ----- ----- -----.</p> <p>④ <u>수출 후</u> ----- ----- ----- ----- -----.</p> <p>제26조(내국작업)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신고는 내국작업종료신고로 같음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① ~ ⑤ (생략)</p> <p>⑥ <u>제13조 제4항</u>에 따라 수입신고전 반출한 잉여물품은 반출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p>	<p>-----</p> <p>-----</p> <p>-----</p> <p>-----</p> <p>-----</p> <p>----- <u>6개월의</u></p> <p>-----</p> <p>----- <u>있다. ('22.11. 개정)</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제13조제4항</u>-----</p> <p>-----</p> <p>-----</p>	<p>-----</p> <p>-----</p> <p>-----</p> <p>-----</p> <p>-----</p> <p>-----</p> <p>○ 내국작업 종료물품의 장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연장</p> <p>-----</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18.12. 신설)</p> <p>1. ~ 3. (생략)</p> <p>⑦ 운영인은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 목록을 조회하여 통관이행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18.12. 신설) &lt;단서 신설&gt;</p>	<p>-----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⑦ ----- ----- ----- ----- -----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즉시 반출신고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관이행내역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8.12. 신설, '22.11.</p>	<p>○ 통관이행내역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신고방법 안내</p>

현행	개정안	비고
<p>⑧ (생략)</p> <p>제29조(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 ①·② (생략)</p> <p>③ 보세공장에서 <u>건조된 선박의 시운전을 위하여</u>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u>반출하고자</u> 하는 때에는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u>각호의</u>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06.6. <u>신설</u>)</p> <p>&lt;<u>신설</u>&gt;</p>	<p><u>단서 신설</u>)</p> <p>⑧ (현행과 같음)</p> <p>제29조(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조된 선박이나 철도차량을</u> -----  -- <u>반출하여 시운전하고자</u> -----  <u>제22조제1항</u>-----  -----  ----- <u>각호</u>  <u>의</u> -----  -- <u>신설, '22.11. 개정-</u></p> <p><u>제29조의2(견본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반출) ①</u> <u>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해당 보세공장의 견본</u></p>	<p>○ 철도차량에 대한 보세공장이외 장소에서 시운전 작업 허용</p> <p>○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의 견본품을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할</p>

현행	개정안	비고
	<p><u>품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해당 보세공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할 수 없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보세공장 물품을 반출하려는 운영인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장소 등록 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u></p>	<p>경우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특례절차 마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p>	<p><u>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장외작업 허가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이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기간을 포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u></p> <p><u>③ 운영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 시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2.11. 본조 신설)</u></p> <p>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① ----- -----</p>	

현행	개정안	비고
<p>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06.6. 개정)</p> <p>1. <u>동일 법인</u>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u>포함한다</u>.) 간 반출입 물품 ('12.6. 개정)</p> <p>2.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u>포함한다</u>.) 간 반출입 물품</p> <p>3.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 특례적용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보세</p>	<p>----- -----</p> <p>1. <u>동일법인</u> ----- ----- <u>포함한다</u>----- -----</p> <p>2. ----- ----- --<u>포함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05.1., '06.6., '12.6. 일부개정)</p> <p>1. 제1항제1호의 물품 가. · 나. (생략) 다. <u>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u></p> <p>2. 제1항제2호의 물품 가. · 나. (생략)</p>	<p>----- ----- ----- ----- ----- -----</p> <p>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중 <u>제조업종의 사업이나 포장·보수·가공·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u></p> <p>2. ----- 가. · 나. (현행과 같음)</p>	<p>○문장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u>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u></p> <p>3. (생략)</p> <p>④ (생략)</p> <p>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절차의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u>제1항 제2호</u>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3호 및 제5호는 <u>제1항 제3호</u>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04.3. 전문신설, '05.1., '06.6., '07.12. 개정)</p>	<p>다. ----- <u>중</u> <u>제조업종의 사업이나 포장·보수·가공·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u></p> <p>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제1항제2호</u>----- ----- <u>제1항제3호</u>----- ----- -----</p>	<p>○문장 정비</p> <p>○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1. ~ 5. (생략)</p> <p>⑥ (생략)</p> <p>제31조(수출신고의 취하) ① (생략)</p> <p>②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물품이 해당 보세공장 이외의 보세구역 또는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u>원보세공장에 재반입한 후</u> 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p> <p>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u>폐기하고자</u>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하며,</p>	<p>1. ~ 5.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1조(수출신고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해당 물품이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된 이후에</u> ----- ----- <u>한다. ('22.11. 개정)</u></p> <p>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폐기하려는</u> ----- -----</p>	<p>○ 어색한 표현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상의 사유로 해당 보세공장의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잉여물품의 원형을 <u>변형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승인 절차 없이 잉여물품 등에 대한 원형변형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인은 작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05.1. 개정, '20.7. 단서 신설)</p> <p>③ (생략)</p> <p>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p>	<p>----- ----- ----- ----- ----- ----- ----- ----- ----- ----- ----- ----- ----- ----- ----- ----- -----</p> <p>변형 하려는</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개정이력 누락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잉여물품을 수입신고전 반출신고,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세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04.3., ’05.1., ’18.12. 개정)</p> <p>⑤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는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p>	<p>----- ----- ----- ----- ----- ----- ----- ----- ----- ----- ----- ----- ----- ----- ----- -----</p> <p>--- ‘05.1., ‘17.7.-----</p> <p>⑤ ----- ----- ----- ----- ----- ----- ----- ----- ----- -----</p>	<p>○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 폐기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7. 개정)</p> <p>⑥ ~ ⑧ (생략)</p> <p>⑨ 세관장은 잉여물품의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p>	<p>-----</p> <p>-----</p> <p>-----</p> <p>----- <u>등으</u></p> <p><u>로부터</u> -----</p> <p>-----</p> <p>-----</p> <p>-----</p> <p>-----</p> <p>-----</p> <p>-----</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⑨ -----</p> <p>-----</p> <p>-----</p>	

현행	개정안	비고
<p>인정되는 경우에는 <u>제17조의2(보세공장의 일시 물품장치)</u>를 준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화물관리시스템에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허가승인 목록을 조회하여 통관이행 내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09.8. 신설, ’13.12. 개정)</p> <p>⑩ (생략)</p> <p>제34조(귀금속류 보세공장) ①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이하 “귀금속류 보세공장”이라 한다)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p>	<p>----- <u>제17조의2</u>를</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⑩ (현행과 같음)</p> <p>제34조(귀금속류 보세공장) ① -----</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비고
<p>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p> <p>1. 설치·<u>운영특허</u> : 물품검사를 위한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 비치,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06.6. 개정)</p> <p>2. 물품의 장치 및 <u>관리</u>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창고 또는 금고에 세관봉인을 할 수 있다. ('06.6. 개정)</p> <p>3. 물품의 <u>반출입검사</u> :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p>	<p>----- -----.</p> <p>1. -----<u>운영특허</u>: ----- ----- ----- ----- -----</p> <p>2. ----- <u>관리</u>: ----- ----- ----- ----- -----</p> <p>3. ----- <u>반출입검사</u>: -----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검사대상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04.3., '06.6. 개정)</p> <p>4. ~ 8. (생략)</p> <p>② 귀금속류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내·외국물품혼용작업승인 : 매건별로 혼용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종료시마다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제35조(기내식 보세공장) ① 기내식 보세공장의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p>	<p>-----</p> <p>-----</p> <p>-----</p> <p>-----</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승인: -----</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35조(기내식 보세공장) ① -----</p> <p>-----</p>	<p>-----</p> <p>-----</p> <p>-----</p> <p>-----</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p> <p>1. (생략)</p> <p>2. 물품의 장치 및 <u>관리</u>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관봉인과 물품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06.6. 개정)</p> <p>3. · 4. (생략)</p> <p>5. 세관장은 기내식 보세공장 특성을 <u>감안하여</u> 이 고시에서 규정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자체내규를 정하여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u>득한</u> 후 운영할 수 있다.</p>	<p>-----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관리</u>: -----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 <u>고려하여</u> ----- ----- ----- -- <u>받은</u>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쉬운 법령팀-404)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기내식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5. (생략)</p> <p>6. 운영인이 기내식을 <u>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장 보세운송 절차를 준용한다.</u>(’18.12. 신설, ‘20. 7. 개정)</p> <p>③ (생략)</p> <p>제35조의2(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 공장으로</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보세운송하려는</u> ----- 「<u>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u>」 제3장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5조의2(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 ----- ----- ----- -----</p>	<p>○ 고시명 변경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한다.</p> <p>1. (생략)</p> <p>2. 해당 업체 연간 수출실적의 <u>3분의 1 이상</u>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자</p> <p>②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시설요건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의 요건의 확인을 생략하거나, 특허신청 시 <u>제6조 제1항 제1호</u>의 제출서류 중 나·</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3분의 1 이상</u>-----</p> <p>-----</p> <p>② -----</p> <p>-----</p> <p>-----</p> <p>-----</p> <p>-----</p> <p>-----</p> <p>----- <u>제6조 제1항 제1호</u>-----</p>	<p></p> <p></p> <p></p> <p></p> <p></p> <p>○ 띄어쓰기 수정</p> <p></p> <p>○ 띄어쓰기 수정</p> <p></p> <p></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비고
<p>라·마목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③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p> <p>1. 세관장은 <u>제17조의2 제1항</u>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의 장치공간 협소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세공장의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할 수 있다.</p> <p>2. 세관장은 <u>제18조 제6항</u>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p>	<p>----- -----.</p> <p>③ ----- ----- ----- -----.</p> <p>1. ----- <u>제17조의2제1항</u>----- ----- ----- ----- -----.</p> <p>2. ----- <u>제18조제6항</u>----- -----</p>	<p>○ 띄어쓰기 수정</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p> <p>3. 세관장은 FTA형 특별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u>제3조 제3호</u>에 따른 유희시설 등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36조(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p>	<p>----- ----- -----.</p> <p>3. ----- ----- <u>제3조제3호</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36조(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① ----- ----- -----</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p> <p>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자</p> <p>2. 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p> <p>3.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신고금액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수출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자(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동일법인인 다른 보세공장</p>	<p>-----.</p> <p>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p> <p>-----</p> <p>-----</p> <p>2. -- 제164조제3항-----</p> <p>-----</p> <p>-----</p> <p>3. &lt;삭 제&gt; ('22.11.)</p>	<p>○인용 고시명 수정</p> <p>○띄어쓰기 수정</p> <p>○수출요건을 삭제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확대 추진</p>

현행	개정안	비고
<p><u>으로 보세운송되어 추가 공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에 포함한다).</u> 다만, 신규 보세공장은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에서 증설된 경우로서 제조·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수출입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p> <p>4. (생략)  ②·③ (생략)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p>	<p>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p>	<p>○ 고시명 오류 수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요건의 적정 여부와 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사항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사항 정기점검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의 자율점검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당해 연도는 특례사항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10.12. 전문신설, ’12.6., ’13.12 개정)</p> <p>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p> <p>1.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p>	<p>----- ----- 1회 이 상 -----. ----- 「자율관리 보 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 ----- 있다. ----- -----</p> <p>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 ----- -----.</p> <p>1. -----</p>	<p>-----</p> <p>○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p>



현행	개정안	비고
<p><u>할때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u> <u>간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세</u> <u>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12.5. 신설)</p> <p>4. <u>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u> <u>입확인대상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u> <u>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u> <u>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u> <u>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u> <u>명세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반입</u> <u>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u></p> <p>5. <u>제18조 제6항에 따른 사용신고 특</u> <u>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u></p>	<p><u>할 때 ----- 자율관리보세</u> <u>공장이나 동일법인 자유무역지역</u> <u>입주기업체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u> ----- ----- <u>있다.</u> (----- -----</p> <p>&lt;삭 제&gt;</p> <p>5. <u>제18조제6항</u>----- -----</p>	<p>주기업체로의 물품 이동에 대해서도 보세운송절차 생 략 특례 부여</p> <p>○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1 항에 따라 현재 모든 보세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내 용이므로 규정 삭제</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특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6. 제40조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p> <p>6. 제40조제1항----- ----- 있다. ('22.11. 개정)</p> <p>7. 제12조제3항 각 호의 물품 외에도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관련 있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22.11. 신설)</p> <p>8.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물품이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에 해당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만불(FOB기준) 이하인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2.11. 신설)</p> <p>9. 제4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p>	<p>○ 재고조사 생략 범위 명확화</p> <p>○ 보세공장 반입대상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p> <p>○ 긴급 발송이 필요한 소량 화물에 대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p> <p>○ 장기재고물품에 대해서도</p>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p> <p>② (생략)</p> <p>③ <u>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u> 사용신고,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보세공장 장기재고 현황 및 처리 계획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2.11. 신설)</u></p> <p>10. <u>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의 견본품을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할 때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22.11. 신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u> ----- ----- ----- -----.</p>	<p>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혜택 확대</p> <p>○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의 견본품을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할 경우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특례절차 마련</p> <p>○자율관리보세공장에 신규 적용되는 특례사항에 대해 자체 기록내용 제출 의무</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20.@. 개정)</p> <p>② 운영인은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통관시스템의 “수출신고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 절차를 따른다.(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 연장신청(별지 제21호</p>	<p>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①            -----            -----            -----            -----            ----- . (‘20.7-----</p> <p>② -----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의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 절차에 따른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신청서의 제출 및 승</p>	<p>○오자(誤字) 수정</p> <p>○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서식)” 절차를 따른다) ('04.3., '05.1., '12.6., '20.7. 개정)</p> <p>③ (생략)</p> <p>④ 운영인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되어 보세운송된 물품이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적재기간 내에 적재할 수 없어 <u>수출신고수리를 취하 하려는</u> 경우에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신청(별지 제20호의2서식)을 하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0.7. 신설)</p> <p><u>&lt;후단 신설&gt;</u></p>	<p><u>인으로 한다.</u> -----</p> <p>--- '20.7., '22.11.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p> <p>-----</p> <p>----- 한다. <u>이 때 운영인은 재반입 신청을 하는 때에 수출신고 취하 신청을 할 수 있다.</u> ('20.7. 신설, '22.11. 개정)</p>	<p>○ 재반입하기 전에도 수출신고 취하 신청은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인 신고 편의 제고</p>



현행	개정안	비고
<p>서 건조된 선박과 항공기의 선(기)적 관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1항을 적용한다. ('05.1., '09.8., '10.12. 개정)</p> <p>제40조(재고조사) ① (생략)</p> <p>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p>	<p>-----</p> <p>-----</p> <p>----- <u>제48조제1항</u> -----</p> <p>-----</p> <p>제40조(재고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현행	개정안	비고
<p>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04.3. 신설, '18.12. 개정)</p> <p>1. ~ 2. (생략)</p> <p>3.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p> <p>4. ~ 7. (생략)</p> <p>③ ~ ⑥ (생략)</p> <p>⑦ 세관장은 물품의 종류와 작업공정 등을 <u>감안하여</u>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시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1. 전자제품(반도체 제품 등)원재료로서 게르마늄, 실리콘, 골드와 이어 등과 같이 미세하고 축수확</p>	<p>-----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32조제1항----- ----- -----</p> <p>4.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고려하여</u> ----- ----- -----.</p> <p>1. ----- 등) 원재료로서 게르마늄----- -----</p>	<p>○ 띄어쓰기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외래어표기법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포장단위의 조사</p> <p>2. 제조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변형되어 수량확인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서 부정유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예 : 선박 및 산업설비 등)은 업체의 작업현황에 따른 합리적인 수량확인 방법으로 조사</p> <p>3. (생략)</p> <p>⑧ 운영인이 장부기장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의 시정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 시정이 이</p>	<p>----- --</p> <p>2. ----- ----- ----- ----- ----- 예: ----- ----- ----- ----- -----</p> <p>3. (현행과 같음)</p> <p>⑧ ----- ----- ----- -----</p>	<p>○ 띄어쓰기 수정</p> <p>○ 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루어지지 않는 경우 <u>제16조(물품의 반입정지)</u>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p>----- <u>제16조</u> ----- -----.</p>	
<p>⑨ 실지조사결과 물품의 수량이 부족함을 발견하거나 잉여물품을 승인 없이 처분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u>제14조 제1항</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p>	<p>⑨ ----- ----- ----- ----- ----- ----- ----- ----- ----- ----- ----- ----- ----- -----</p> <p>. ----- <u>제14조제1항</u> ----- ----- ----- ----- ----- ----- -----</p>	<p>○ 띄어쓰기 수정</p>
<p>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p>	<p>⑩ ----- -----</p>	<p>○ 재고조사 결과를 확정하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p>



현행	개정안	비고
<p>함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업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42조(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 ① 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3. (생략)</p> <p>4. 법 제1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신고(별지 제2호의2서식) ('05.1. 신설)</p>	<p>----- ----- <u>그 밖의</u> ----- ----- -----.</p> <p>제42조(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제179조제2항</u>----- -----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5. 기타 설치·운영특허 <u>내용중</u> 변경 사항 신고</p> <p>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화물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1. 개정)</p> <p>1. <u>법 제174조 제1항</u> 및 영 제18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 및 기간갱신</p> <p>2. (생략)</p> <p>3. <u>법 제179조 제1항 제2호</u> 및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상실 ('05.1. 개정)</p>	<p>5. <u>그 밖에</u> ----- 내용 중 -----</p> <p>② -----</p> <p>-----</p> <p>-----</p> <p>-----</p> <p>-----</p> <p>-----</p> <p>1. <u>법 제174조제1항</u> -----</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79조제1항제2호</u> -----</p> <p>-----</p> <p>-----</p>	<p>○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띄어쓰기 오류 수정</p> <p>○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4. · 5. (생 략)</p> <p>6. <u>제1항 제2호</u>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치·운영특허의 변경사항</p> <p>③ (생 략)</p> <p>제42조의2(세관공무원의 임무)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제27조 제2항</u>에 따른 수입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여부</p> <p>3. ~ 7. (생 략)</p> <p>8. <u>기타</u> 세관장의 명령 이행여부</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제1항제2호</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2조의2(세관공무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27조제2항</u>----- -----</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세관공무원이 제2항 <u>각호의</u>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서류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04.3. 신설)</p> <p>④ 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u>제175조 제4호</u>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42조의3(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p> <p>①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전산</p>	<p>③ ----- <u>각 호의</u> ----- ----- ----- ----- ----- ----- ----- ----- ----- -----</p> <p>④ ----- -- <u>제175조제4호</u>----- ----- ----- ----- ----- -----</p> <p>제42조의3(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p> <p>① ----- -----</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9. <u>기타</u> 이 고시에서 정하는 확인·기록 사항</p> <p>② (생략)</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4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보세공장물품의</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2.11.신설)</u></p> <p>제43조(준용규정) -----</p> <p>-----</p>	<p></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 규정 위반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p> <p>○ 고시명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p> <p>1.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때 ('18.12. 신설) &lt;단서 신설&gt;</p> <p>2. ~ 9. (생략)</p> <p>10. 제29조제2항, 제30조 제4항, 제33조 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p> <p>11. 제34조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작업한 때</p> <p>12. (생략)</p>	<p>----- ----- -----.</p> <p>1. ----- 때. 다만,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8.12. 신설, '22.11. 단서 신설)</p> <p>2. ~ 9. (현행과 같음)</p> <p>10. ----- 제30조제4항, 제33조 제1항-----</p> <p>11. 제34조제1항제5호----- -----</p> <p>12. (현행과 같음)</p>	<p>○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제재 면제 가능</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p> <p>1. <u>제17조의2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2항 및 제40조 제2항</u>을 위반한 때</p> <p>2. ~ 4. (생략)</p> <p>5. 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u>기타</u> 손실이 발생한 때</p> <p>6. (생략)</p>	<p>② ----- ----- ----- ----- -----.</p> <p>1. <u>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 <u>그 밖에</u> -----</p> <p>6.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11.3. 개정)</p> <p>1. (생략)</p> <p>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경우</p> <p>3. (생략)</p> <p>제4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u></p>	<p>-----.</p> <p>-----</p> <p>----- <u>그러지 않다.</u> -----</p> <p>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46조(재검토기한) -----</p> <p>-----</p> <p>----- <u>2023년 1월 1일을</u> -----</p> <p>----- <u>12월 31일까</u></p>	<p></p> <p></p> <p></p> <p>○인용고시명 개정 반영</p> <p></p> <p></p> <p>○재검토기한 재설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별표 2]</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직경 1.5cm</p> </div> <p>[별지 제1호서식]</p>	<p><u>지름</u> ----- -----.</p> <p><u>부칙 &lt;고시 제2022- 호(2022. 11. .)&gt;</u></p> <p><u>이 고시는 2022년 11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p> <p>[별표 2]</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름 1.5cm</p> </div> <p>[별지 제1호서식]</p>	<p>○알기 쉬운 용어 사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right;">(뒤 쪽)</p> <p style="text-align: center;"><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시 첨부 서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첨부서류</td> <td> <p><b>1. 신규의 경우</b>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p> <p><b>2. 갱신의 경우</b>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p> </td> </tr>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td> <td> <p>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p> <p>※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의2서식]</p>	첨부서류	<p><b>1. 신규의 경우</b>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p> <p><b>2. 갱신의 경우</b>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p>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p>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p> <p>※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p>	<p style="text-align: right;">(뒤 쪽)</p> <p style="text-align: center;"><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시 첨부 서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첨부서류</td> <td> <p><b>1. 신규의 경우</b>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p> <p><b>2. 갱신의 경우</b>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p> </td> </tr>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td> <td> <p>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p> <p>※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의2서식]</p>	첨부서류	<p><b>1. 신규의 경우</b>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p> <p><b>2. 갱신의 경우</b>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p>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p>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p> <p>※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p>	<p>○ 전기안전 관련 검사확인증 제출 근거법령 변경 반영</p>
첨부서류	<p><b>1. 신규의 경우</b>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p> <p><b>2. 갱신의 경우</b>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p>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p>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p> <p>※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p>									
첨부서류	<p><b>1. 신규의 경우</b>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p> <p><b>2. 갱신의 경우</b>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p>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p>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p> <p>※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1호의2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신청번호 :</td> <td>처리기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b></td> <td style="text-align: center;">8일</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① 상 호</td> <td>②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td> </tr>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신청내역</td>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r> <tr>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⑦ 종 류</td> </tr> <tr> <td>⑧ 소 재 지</td> <td></td> </tr> <tr> <td>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d></td> </tr> <tr> <td>⑩ 작업 설비명</td> <td></td> </tr> <tr> <td>⑪ 작 업 종 류</td> <td></td> </tr> <tr> <td>⑫ 원재료명</td> <td></td> </tr> <tr> <td>⑬특허(갱신)기간</td> <td></td> </tr> <tr> <td colspan="2">「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귀 하</td> <td></td> </tr> <tr> <td>[첨부서류]</td> <td>수수료</td> <td></td> </tr> <tr> <td>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d></td> </tr> <tr> <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 <td></td> <td></td> </tr> <tr> <td>1.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2.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신청번호 :		처리기간	<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b>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신청내역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 설비명		⑪ 작 업 종 류		⑫ 원재료명		⑬특허(갱신)기간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2.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			<p>(별지 제1호의2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신청번호 :</td> <td>처리기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b></td> <td style="text-align: center;">8일</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① 상 호</td> <td>②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td> </tr>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신청내역</td>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r> <tr>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td> </tr> <tr> <td>⑦ 소 재 지</td> <td></td> </tr> <tr> <td>⑧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d></td> </tr> <tr> <td>⑨ 작업 설비명</td> <td></td> </tr> <tr> <td>⑩ 작 업 종 류</td> <td></td> </tr> <tr> <td>⑪ 원재료명</td> <td></td> </tr> <tr> <td>⑫특허(갱신)기간</td> <td></td> </tr> <tr> <td colspan="2">「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귀 하</td> <td></td> </tr> <tr> <td>[첨부서류]</td> <td>수수료</td> <td></td> </tr> <tr> <td>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d></td> </tr> <tr> <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 <td></td> <td></td> </tr> <tr> <td>1.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2.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신청번호 :		처리기간	<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b>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신청내역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소 재 지		⑧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⑨ 작업 설비명		⑩ 작 업 종 류		⑪ 원재료명		⑫특허(갱신)기간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2.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			<p>○ 보세공장 종류(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겸용) 구분 삭제</p>
신청번호 :		처리기간																																																																																																		
<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b>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신청내역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 설비명																																																																																																			
	⑪ 작 업 종 류																																																																																																			
	⑫ 원재료명																																																																																																			
	⑬특허(갱신)기간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2.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																																																																																																				
신청번호 :		처리기간																																																																																																		
<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b>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신청내역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소 재 지																																																																																																			
	⑧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⑨ 작업 설비명																																																																																																			
	⑩ 작 업 종 류																																																																																																			
	⑪ 원재료명																																																																																																			
	⑫특허(갱신)기간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2.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1호의3서식)</p> <p>지정번호 : <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b></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운명인</td> <td>① 상 호</td> <td>②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td> </tr> <tr>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r> <tr> <td rowspan="7">신청내역</td>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⑦ 종류</td> </tr> <tr> <td>⑧ 소재지</td> <td></td> </tr> <tr> <td>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d></td> </tr> <tr> <td>⑩ 작업설비명</td> <td></td> </tr> <tr> <td>⑪ 생산제품명</td> <td></td> </tr> <tr> <td>⑫ 주요원재료명</td> <td></td> </tr> <tr> <td>⑬ 지정기간</td> <td></td> </tr> <tr> <td>⑭ 특례적용대상</td> <td></td> </tr> </table> <p>「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합니다.</p> <p>20년 월 일</p> <p>○○세관장 <input type="checkbox"/> 직인</p> <p>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p>	운명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신청내역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지정기간		⑭ 특례적용대상		<p>(별지 제1호의3서식)</p> <p>지정번호 : <b>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b></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운명인</td> <td>① 상 호</td> <td>②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td> </tr> <tr>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r> <tr> <td rowspan="7">신청내역</td>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td> </tr> <tr> <td>⑦ 소재지</td> <td></td> </tr> <tr> <td>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d></td> </tr> <tr> <td>⑩ 작업설비명</td> <td></td> </tr> <tr> <td>⑪ 생산제품명</td> <td></td> </tr> <tr> <td>⑫ 주요원재료명</td> <td></td> </tr> <tr> <td>⑬ 지정기간</td> <td></td> </tr> <tr> <td>⑭ 특례적용대상</td> <td></td> </tr> </table> <p>「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합니다.</p> <p>20년 월 일</p> <p>○○세관장 <input type="checkbox"/> 직인</p> <p>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p>	운명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신청내역	⑥ 보세공장명칭		⑦ 소재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지정기간		⑭ 특례적용대상		<p>○보세공장 종류(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겸용) 구분 삭제</p>
운명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신청내역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지정기간																																																	
⑭ 특례적용대상																																																		
운명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신청내역	⑥ 보세공장명칭																																																	
	⑦ 소재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지정기간																																																	
⑭ 특례적용대상																																																		

현 행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4 서식)

신청번호 :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신규 30일 변경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재지																												
신청내역	⑨ 특례적용대상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사무에 체크(☑)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야</th> <th>특례적용 내용</th> <th>신청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사용신고</td> <td>중휴일, 야간 등 전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반출입신고</td> <td>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공장간 보세운송 원자결탁에 한함</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보세운송신고</td> <td>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장외일시경치</td> <td>장외 일시경치물품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장외작업</td> <td>장외작업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td> <td>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내국작업</td> <td>내국작업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인여물품</td> <td>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분 야	특례적용 내용	신청 대상	사용신고	중휴일, 야간 등 전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반출입신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공장간 보세운송 원자결탁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장외일시경치	장외 일시경치물품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장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내국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인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input type="checkbox"/>
		분 야	특례적용 내용	신청 대상																									
		사용신고	중휴일, 야간 등 전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반출입신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공장간 보세운송 원자결탁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장외일시경치	장외 일시경치물품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장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내국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인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input type="checkbox"/>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매분기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b> 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직전 년도 매출액 입증자료 1부. 3. 직전 년도 수출실적 확인자료 1부. 4. 보세사 채용 확인 서류(채용계획서) 1부. 5. 특례적용 신청대상 증빙서류(뒷면 참조)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 문용지 54g/m <sup>2</sup> (재활용품))																													

개 정 안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4 서식)

신청번호 :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신규 30일 변경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소재지																												
신청내역	⑨ 특례적용대상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사무에 체크(☑)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야</th> <th>특례적용 내용</th> <th>신청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사용신고</td> <td>중휴일, 야간 등 전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반출입신고</td> <td>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공장간 보세운송 원자결탁에 한함</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보세운송신고</td> <td>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장외일시경치</td> <td>장외 일시경치물품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장외작업</td> <td>장외작업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td> <td>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내국작업</td> <td>내국작업 일괄 허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인여물품</td> <td>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분 야	특례적용 내용	신청 대상	사용신고	중휴일, 야간 등 전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반출입신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공장간 보세운송 원자결탁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장외일시경치	장외 일시경치물품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장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내국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인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input type="checkbox"/>
		분 야	특례적용 내용	신청 대상																									
		사용신고	중휴일, 야간 등 전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반출입신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공장간 보세운송 원자결탁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input type="checkbox"/>																									
		장외일시경치	장외 일시경치물품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장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내국작업 일괄 허가	<input type="checkbox"/>																									
		인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input type="checkbox"/>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매분기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b> 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직전 년도 매출액 입증자료 1부. 3. 직전 년도 수출실적 확인자료 1부. 4. 보세사 채용 확인 서류(채용계획서) 1부. 5. 특례적용 신청대상 증빙서류(뒷면 참조)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 문용지 54g/m <sup>2</sup> (재활용품))																													

비 고

○ 보세공장 종류(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겸용) 구분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b>[별지 제1호의5서식]</b></p> <p>【신설】(별지 제1호의5 서식) (갑.지)</p> <p>지정번호 :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6"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운영인</td> <td>① 상 호</td> <td>② 사업지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td> </tr> <tr>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r> <tr>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⑦ 종 류</td> </tr> <tr> <td>⑧ 소 재 지</td> <td></td> </tr> <tr> <td colspan="2"></td> </tr> </table> <p>지정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10"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③ 특례적용대상 (원차 생략 업무)</td> <td colspan="3"><b>■ 특례 적용 대상</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여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례 내용</td> </tr> <tr> <td>사용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중류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td> </tr> <tr> <td>반출입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생략 * 중기 포함 자율관리공간의 보세운송원차 생략</td> </tr> <tr> <td>보세운송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td> </tr> <tr> <td>장외일시정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장외 일시정지물품 일괄 허가</td> </tr> <tr> <td>장외작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장외작업 일괄 허가</td> </tr> <tr> <td>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td> </tr> <tr> <td>내국작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내국작업 일괄 허가</td> </tr> <tr> <td>인여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td> </tr> <tr> <td colspan="3"><b>■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 별첨 참조</b></td> </tr> <tr> <td>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매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매분기</td> </tr> <tr> <td>⑪ 지정기간</td> <td colspan="2">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colspan="3">「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업체로 지정합니다.</b></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지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③ 특례적용대상 (원차 생략 업무)	<b>■ 특례 적용 대상</b>			분야	적용 여부	특례 내용	사용신고	<input type="checkbox"/>	중류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반출입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생략 * 중기 포함 자율관리공간의 보세운송원차 생략	보세운송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장외일시정지	<input type="checkbox"/>	장외 일시정지물품 일괄 허가	장외작업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일괄 허가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input type="checkbox"/>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내국작업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일괄 허가	인여물품	<input type="checkbox"/>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b>■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 별첨 참조</b>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매분기	⑪ 지정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업체로 지정합니다.</b>			20 년 월 일			○○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p><b>[별지 제1호의5서식]</b></p> <p>(별지 제1호의5 서식) (갑.지)</p> <p>지정번호 :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6"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운영인</td> <td>① 상 호</td> <td>② 사업지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td> </tr> <tr>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r> <tr>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td> </tr> <tr> <td>⑦ 소 재 지</td> <td></td> </tr> <tr> <td colspan="2"></td> </tr> </table> <p>지정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10"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③ 특례적용대상 (원차 생략 업무)</td> <td colspan="3"><b>■ 특례 적용 대상</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여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례 내용</td> </tr> <tr> <td>사용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중류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td> </tr> <tr> <td>반출입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생략 * 중기 포함 자율관리공간의 보세운송원차 생략</td> </tr> <tr> <td>보세운송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td> </tr> <tr> <td>장외일시정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장외 일시정지물품 일괄 허가</td> </tr> <tr> <td>장외작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장외작업 일괄 허가</td> </tr> <tr> <td>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td> </tr> <tr> <td>내국작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내국작업 일괄 허가</td> </tr> <tr> <td>인여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td> </tr> <tr> <td colspan="3"><b>■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 별첨 참조</b></td> </tr> <tr> <td>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매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매분기</td> </tr> <tr> <td>⑪ 지정기간</td> <td colspan="2">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colspan="3">「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업체로 지정합니다.</b></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지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소 재 지				③ 특례적용대상 (원차 생략 업무)	<b>■ 특례 적용 대상</b>			분야	적용 여부	특례 내용	사용신고	<input type="checkbox"/>	중류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반출입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생략 * 중기 포함 자율관리공간의 보세운송원차 생략	보세운송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장외일시정지	<input type="checkbox"/>	장외 일시정지물품 일괄 허가	장외작업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일괄 허가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input type="checkbox"/>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내국작업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일괄 허가	인여물품	<input type="checkbox"/>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b>■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 별첨 참조</b>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매분기	⑪ 지정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업체로 지정합니다.</b>			20 년 월 일			○○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p>○ 보세공장 종류(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겸용) 구분 삭제</p>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지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③ 특례적용대상 (원차 생략 업무)	<b>■ 특례 적용 대상</b>																																																																																																																													
	분야	적용 여부	특례 내용																																																																																																																											
	사용신고	<input type="checkbox"/>	중류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반출입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생략 * 중기 포함 자율관리공간의 보세운송원차 생략																																																																																																																											
	보세운송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장외일시정지	<input type="checkbox"/>	장외 일시정지물품 일괄 허가																																																																																																																											
	장외작업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일괄 허가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input type="checkbox"/>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내국작업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일괄 허가																																																																																																																											
	인여물품	<input type="checkbox"/>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b>■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 별첨 참조</b>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매분기																																																																																																																												
⑪ 지정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업체로 지정합니다.</b>																																																																																																																														
20 년 월 일																																																																																																																														
○○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지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소 재 지																																																																																																																													
③ 특례적용대상 (원차 생략 업무)	<b>■ 특례 적용 대상</b>																																																																																																																													
	분야	적용 여부	특례 내용																																																																																																																											
	사용신고	<input type="checkbox"/>	중류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자동 수리																																																																																																																											
	반출입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생략 * 중기 포함 자율관리공간의 보세운송원차 생략																																																																																																																											
	보세운송신고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장외일시정지	<input type="checkbox"/>	장외 일시정지물품 일괄 허가																																																																																																																											
	장외작업	<input type="checkbox"/>	장외작업 일괄 허가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input type="checkbox"/>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내국작업	<input type="checkbox"/>	내국작업 일괄 허가																																																																																																																											
	인여물품	<input type="checkbox"/>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b>■ 특례 적용 대상/작업 상세 내역 : 별첨 참조</b>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매분기																																																																																																																												
⑪ 지정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특례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b>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업체로 지정합니다.</b>																																																																																																																														
20 년 월 일																																																																																																																														
○○ 세 관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1호의6서식]  <u>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u>  <u>운영상황 보고서</u></p> <p>(뒤 쪽)</p> <p><u>보세공장 월(분기)보고서 작성요령</u></p> <p>① ~ ⑳ (생략)</p> <p>㉘ 처리방법 : ㉠폐기(멸각) ㉡수입통관 ㉢수출(반송)통관으로 구분하여 건수, 수량 및 중량을 기재</p> <p>㉙ ~ ㉛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의6서식]  <u>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u>  <u>운영상황 보고서</u></p> <p>(뒤 쪽)</p> <p><u>보세공장 월(분기)보고서 작성요령</u></p> <p>① ~ ㉘ (현행과 같음)</p> <p>㉘ 처리방법 : ㉠폐기 ㉡수입통관 ㉢수출(반송)통관으로 구분하여 건수, 수량 및 중량을 기재</p> <p>㉙ ~ ㉛ (현행과 같음)</p>	<p>○오타 수정</p> <p>○알기 쉬운 용어 사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2호서식]</p> <p>(별지 제2호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219 403 846 1236"> <tr> <td colspan="4">특허번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b></td> </tr>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운영인</td> <td>① 상 호</td> <td colspan="2">②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d></td> </tr> <tr>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⑦ 종 류</td> <td></td> </tr> <tr> <td rowspan="6"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청내역</td> <td colspan="3">⑧ 소 재 지</td> </tr> <tr> <td colspan="3">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r> <tr> <td colspan="3">⑩ 작업 설비명</td> </tr> <tr> <td colspan="3">⑪ 생산제품명</td> </tr> <tr> <td colspan="3">⑫ 주요원재료명</td> </tr> <tr> <td colspan="3">⑬ 특 허 기 간</td> </tr> <tr> <td colspan="4">⑭ 특 허 조 건</td> </tr> <tr> <td colspan="4">「관세법」 제17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운영을 특허합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특허번호 :				<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b>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신청내역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 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특 허 기 간			⑭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운영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p>[별지 제2호서식]</p> <p>(별지 제2호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891 403 1518 1236"> <tr> <td colspan="4">특허번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b></td> </tr>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운영인</td> <td>① 상 호</td> <td colspan="2">②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생년월일</td> <td></td> </tr> <tr> <td>⑥ 보세공장명칭</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6"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청내역</td> <td colspan="3">⑦ 소 재 지</td> </tr> <tr> <td colspan="3">⑧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r> <tr> <td colspan="3">⑨ 작업 설비명</td> </tr> <tr> <td colspan="3">⑩ 생산제품명</td> </tr> <tr> <td colspan="3">⑪ 주요원재료명</td> </tr> <tr> <td colspan="3">⑫ 특 허 기 간</td> </tr> <tr> <td colspan="4">⑬ 특 허 조 건</td> </tr> <tr> <td colspan="4">「관세법」 제17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운영을 특허합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특허번호 :				<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b>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신청내역	⑦ 소 재 지			⑧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⑨ 작업 설비명			⑩ 생산제품명			⑪ 주요원재료명			⑫ 특 허 기 간			⑬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운영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p>○보세공장 종류(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겸용) 구분 삭제</p>
특허번호 :																																																																																																																		
<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b>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신청내역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 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특 허 기 간																																																																																																																	
⑭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운영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특허번호 :																																																																																																																		
<b>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b>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신청내역	⑦ 소 재 지																																																																																																																	
	⑧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⑨ 작업 설비명																																																																																																																	
	⑩ 생산제품명																																																																																																																	
	⑪ 주요원재료명																																																																																																																	
	⑫ 특 허 기 간																																																																																																																	
⑬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운영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2호의2서식]</p> <p>(별지 제2호의2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219 403 846 898"> <thead> <tr> <th colspan="2">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th> <th>처리기간</th> </tr> <tr> <td colspan="2"></td> <td>5일</td> </tr> </thead> <tbody> <tr> <td>① 법인명칭</td> <td>③ 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② 법인등록번호</td> <td></td> <td></td> </tr> <tr> <td>④ 주소</td> <td></td> <td></td> </tr> <tr> <td>⑤ 대표자</td> <td>⑥ 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⑦ 보세구역명칭</td> <td>⑧ 종류</td> <td></td> </tr> <tr> <td>⑨ 소재지</td> <td></td> <td></td> </tr> <tr> <td>⑩ 운영인</td> <td></td> <td></td> </tr> <tr> <td>⑪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d></td> <td></td> </tr> <tr> <td>⑫ 작업설비명</td> <td></td> <td></td> </tr> <tr> <td>⑬ 작업의종류</td> <td></td> <td></td> </tr> <tr> <td>⑭ 생산제품명</td> <td></td> <td></td> </tr> <tr> <td>⑮ 주요원재료</td> <td></td> <td></td> </tr> <tr> <td>⑯ 특허잔여기간</td> <td></td> <td></td> </tr> <tr> <td>⑰ 승계사유</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관세법」 제1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세관장 귀하</b></p> <table border="1" data-bbox="219 1090 846 1273"> <thead> <tr> <th>첨부서류</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법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입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점검사명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 <td>없음</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 법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세구역명칭	⑧ 종류		⑨ 소재지			⑩ 운영인			⑪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⑫ 작업설비명			⑬ 작업의종류			⑭ 생산제품명			⑮ 주요원재료			⑯ 특허잔여기간			⑰ 승계사유			첨부서류	수수료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법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입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점검사명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p>[별지 제2호의2서식]</p> <p>(별지 제2호의2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891 403 1518 898"> <thead> <tr> <th colspan="2">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th> <th>처리기간</th> </tr> <tr> <td colspan="2"></td> <td>5일</td> </tr> </thead> <tbody> <tr> <td>① 법인명칭</td> <td>③ 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② 법인등록번호</td> <td></td> <td></td> </tr> <tr> <td>④ 주소</td> <td></td> <td></td> </tr> <tr> <td>⑤ 대표자</td> <td>⑥ 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⑦ 보세구역명칭</td> <td></td> <td></td> </tr> <tr> <td>⑨ 소재지</td> <td></td> <td></td> </tr> <tr> <td>⑩ 운영인</td> <td></td> <td></td> </tr> <tr> <td>⑪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td> <td></td> <td></td> </tr> <tr> <td>⑫ 작업설비명</td> <td></td> <td></td> </tr> <tr> <td>⑬ 작업의종류</td> <td></td> <td></td> </tr> <tr> <td>⑭ 생산제품명</td> <td></td> <td></td> </tr> <tr> <td>⑮ 주요원재료</td> <td></td> <td></td> </tr> <tr> <td>⑯ 특허잔여기간</td> <td></td> <td></td> </tr> <tr> <td>⑰ 승계사유</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관세법」 제1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세관장 귀하</b></p> <table border="1" data-bbox="891 1090 1518 1273"> <thead> <tr> <th>첨부서류</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법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입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점검사명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 <td>없음</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p>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 법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세구역명칭			⑨ 소재지			⑩ 운영인			⑪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⑫ 작업설비명			⑬ 작업의종류			⑭ 생산제품명			⑮ 주요원재료			⑯ 특허잔여기간			⑰ 승계사유			첨부서류	수수료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법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입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점검사명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p>○보세공장 종류(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겸용) 구분 삭제</p>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 법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세구역명칭	⑧ 종류																																																																																																									
⑨ 소재지																																																																																																										
⑩ 운영인																																																																																																										
⑪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⑫ 작업설비명																																																																																																										
⑬ 작업의종류																																																																																																										
⑭ 생산제품명																																																																																																										
⑮ 주요원재료																																																																																																										
⑯ 특허잔여기간																																																																																																										
⑰ 승계사유																																																																																																										
첨부서류	수수료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법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입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점검사명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 법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세구역명칭																																																																																																										
⑨ 소재지																																																																																																										
⑩ 운영인																																																																																																										
⑪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⑫ 작업설비명																																																																																																										
⑬ 작업의종류																																																																																																										
⑭ 생산제품명																																																																																																										
⑮ 주요원재료																																																																																																										
⑯ 특허잔여기간																																																																																																										
⑰ 승계사유																																																																																																										
첨부서류	수수료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법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입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안전점검사명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6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기재요령</b></p> <p>① 상호 : 보세공장 명칭을 기재          ② 주소 : 보세공장 주소를 기재          ③ 대표자 성명 : 보세공장 운영인의 성명을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 보세공장 운영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⑤ 작업기간 : 보세작업기간을 기재          ⑥ 품명 : 보세작업기간 생산된 제품명을 기재          ⑦ 규격 : 보세작업기간 생산된 제품의 규격을 기재          ⑧ 수량(중량) : 보세작업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을 기재          ⑨ 가격(₩) :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내수판매(수입통관)시 가격을 기재          ⑩, ⑪ 비고 : 필요시 사용          ⑫ 구분 : 소요원재료에 대한 내·외자 구별표시로서, 과세보류된 원재료인 경우 '외'로, 내국원자재인 경우 '내'로 표기(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의한 제품과제시)          ⑬ 품명 : 보세작업기간 사용된 원재료별 품명을 기재          ⑭ 규격 : 보세작업기간 사용된 원재료별 품명에 대한 규격을 기재          ⑮ 수량(중량) : 보세작업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을 기재          ※ 원재료별 총량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공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의 손모량 이외에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원재료 자체불량,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 기계의 고장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량 등)에 대하여도 소요량으로 인정          ⑯ 단위소요량(가격) : ⑬를 ⑮로 나눈량으로서 제품1단위로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량이며, 가격은 외자는 반입시 수입신고필증상 가격이며, 내자인 경우는 반입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임.</p>	<p>[별지 제6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기재요령</b></p> <p>① 상호 : 보세공장 명칭을 기재          ② 주소 : 보세공장 주소를 기재          ③ 대표자 성명 : 보세공장 운영인의 성명을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 보세공장 운영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⑤ 작업기간 : 보세작업기간을 기재          ⑥ 품명 : 보세작업기간 생산된 제품명을 기재          ⑦ 규격 : 보세작업기간 생산된 제품의 규격을 기재          ⑧ 수량(중량) : 보세작업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을 기재          ⑨ 가격(₩) :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내수판매(수입통관)시 가격을 기재          ⑩, ⑪ 비고 : 필요시 사용          ⑫ 구분 : 소요원재료에 대한 <u>내국·외국물품</u> 구별표시로서, 과세보류된 원재료인 경우 '외'로, <u>내국원자재인 경우 '내'로 표기(내국·외국물품 혼용승인에 의한 제품과제시)</u>          ⑬ 품명 : <u>보세작업기간</u> 사용된 원재료별 품명을 기재          ⑭ 규격 : <u>보세작업기간</u> 사용된 원재료별 품명에 대한 규격을 기재          ⑮ 수량(중량) : <u>보세작업기간동안</u>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을 기재          ※ 원재료별 총량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공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의 손모량 이외에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원재료 자체불량,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 기계의 고장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량 등)에 대하여도 소요량으로 인정          ⑯ 단위소요량(가격) : ⑬를 ⑮로 나눈량으로서 제품1단위로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량이며, 가격은 <u>외국물품인 경우</u> 반입시 수입신고필증상 가격이며, <u>내국물품인 경우</u>는 반입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임.</p>	<p>○알기 쉬운 용어 사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8호의2서식]</p> <p>(별지 제8호의2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접수번호</td> <td style="width: 60%;">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td> <td style="width: 30%;">처리기간</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완료보고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①보세공장명</td> <td>②보세구역 부호</td> <td></td> </tr> <tr> <td>③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td> <td>④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td> <td></td> </tr> <tr> <td>⑤작업장소재지</td> <td>⑥작업허가기간</td> <td></td> </tr> <tr> <td colspan="3">※ 허가내역</td> </tr> <tr> <td>⑦허가번호</td> <td>⑧생산 제품명</td> <td>⑨규격</td> </tr> <tr> <td></td> <td></td> <td>⑩수량 (총량)</td> </tr> <tr> <td></td> <td></td> <td>⑪형태</td> </tr> <tr> <td colspan="3">* 붙합 또는 추가 허가분 모두 기재</td> </tr> <tr> <td colspan="3">* 반제품 완제품</td> </tr> <tr> <td colspan="3">※ 작업결과(제품,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 처리내용)</td> </tr> <tr> <td>⑫구분</td> <td>⑬품명</td> <td>⑭규격</td> </tr> <tr> <td></td> <td></td> <td>⑮수량 (총량)</td> </tr> <tr> <td></td> <td></td> <td>⑯근거번호</td> </tr> <tr> <td colspan="3">* ㉠구분 보세공장반입, 현장 수출 현장 수입, 현장 폐기 현장 압수도, 기타 장외일시장차 허가장소 반입 * ㉡구분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으로 세관 관장수입(제품, 완제품(잉여물품) 등</td> </tr> <tr> <td colspan="3">*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폐기승인번호, 압수도 승인번호, 장외일시장차허가번호 등</td> </tr> <tr> <td colspan="3">※ 소요 원재료명세(허가받은 물품에 한한다)</td> </tr> <tr> <td>⑰구분</td> <td>⑱품명</td> <td>⑲규격</td> </tr> <tr> <td></td> <td></td> <td>⑳허가량</td> </tr> <tr> <td></td> <td></td> <td>㉑반출량</td> </tr> <tr> <td></td> <td></td> <td>㉒사용량</td> </tr> <tr> <td colspan="3">* 외국물품, 관공물품, 내국물품</td> </tr> <tr> <td colspan="3">「보세공장은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0...년...월...일</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보고자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귀하</td> </tr> <tr> <td colspan="3">첨부서류 : 작업기간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td> </tr> </table>	접수번호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처리기간		완료보고서	1일	①보세공장명	②보세구역 부호		③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	④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⑤작업장소재지	⑥작업허가기간		※ 허가내역			⑦허가번호	⑧생산 제품명	⑨규격			⑩수량 (총량)			⑪형태	* 붙합 또는 추가 허가분 모두 기재			* 반제품 완제품			※ 작업결과(제품,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 처리내용)			⑫구분	⑬품명	⑭규격			⑮수량 (총량)			⑯근거번호	* ㉠구분 보세공장반입, 현장 수출 현장 수입, 현장 폐기 현장 압수도, 기타 장외일시장차 허가장소 반입 * ㉡구분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으로 세관 관장수입(제품, 완제품(잉여물품) 등			*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폐기승인번호, 압수도 승인번호, 장외일시장차허가번호 등			※ 소요 원재료명세(허가받은 물품에 한한다)			⑰구분	⑱품명	⑲규격			⑳허가량			㉑반출량			㉒사용량	* 외국물품, 관공물품, 내국물품			「보세공장은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년...월...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 작업기간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p>[별지 제8호의2서식]</p> <p>(별지 제8호의2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접수번호</td> <td style="width: 60%;">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td> <td style="width: 30%;">처리기간</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완료보고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①보세공장명</td> <td>②보세구역 부호</td> <td></td> </tr> <tr> <td>③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td> <td>④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td> <td></td> </tr> <tr> <td>⑤작업장소재지</td> <td>⑥작업허가기간</td> <td></td> </tr> <tr> <td colspan="3">※ 허가내역</td> </tr> <tr> <td>⑦허가번호</td> <td>⑧생산 제품명</td> <td>⑨규격</td> </tr> <tr> <td></td> <td></td> <td>⑩수량 (총량)</td> </tr> <tr> <td></td> <td></td> <td>⑪형태</td> </tr> <tr> <td colspan="3">* 붙합 또는 추가 허가분 모두 기재</td> </tr> <tr> <td colspan="3">* 반제품 완제품</td> </tr> <tr> <td colspan="3">※ 작업결과(제품,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 처리내용)</td> </tr> <tr> <td>⑫구분</td> <td>⑬품명</td> <td>⑭규격</td> </tr> <tr> <td></td> <td></td> <td>⑮수량 (총량)</td> </tr> <tr> <td></td> <td></td> <td>⑯근거번호</td> </tr> <tr> <td colspan="3">* ㉠구분 보세공장반입, 현장 수출 현장 수입, 현장 폐기 현장 압수도, 타보세구역 반출 기...다 장외일시장차 허가장소 반입 * ㉡구분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으로 세관 관장수입(제품, 완제품(잉여물품) 등</td> </tr> <tr> <td colspan="3">*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폐기승인번호, 압수도 승인번호, 장외일시장차허가번호 등</td> </tr> <tr> <td colspan="3">※ 소요 원재료명세(허가받은 물품에 한한다)</td> </tr> <tr> <td>⑰구분</td> <td>⑱품명</td> <td>⑲규격</td> </tr> <tr> <td></td> <td></td> <td>⑳허가량</td> </tr> <tr> <td></td> <td></td> <td>㉑반출량</td> </tr> <tr> <td></td> <td></td> <td>㉒사용량</td> </tr> <tr> <td colspan="3">* 외국물품, 관공물품, 내국물품</td> </tr> <tr> <td colspan="3">「보세공장은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0...년...월...일</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보고자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귀하</td> </tr> <tr> <td colspan="3">첨부서류 : 작업기간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td> </tr> </table>	접수번호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처리기간		완료보고서	1일	①보세공장명	②보세구역 부호		③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	④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⑤작업장소재지	⑥작업허가기간		※ 허가내역			⑦허가번호	⑧생산 제품명	⑨규격			⑩수량 (총량)			⑪형태	* 붙합 또는 추가 허가분 모두 기재			* 반제품 완제품			※ 작업결과(제품,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 처리내용)			⑫구분	⑬품명	⑭규격			⑮수량 (총량)			⑯근거번호	* ㉠구분 보세공장반입, 현장 수출 현장 수입, 현장 폐기 현장 압수도, 타보세구역 반출 기...다 장외일시장차 허가장소 반입 * ㉡구분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으로 세관 관장수입(제품, 완제품(잉여물품) 등			*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폐기승인번호, 압수도 승인번호, 장외일시장차허가번호 등			※ 소요 원재료명세(허가받은 물품에 한한다)			⑰구분	⑱품명	⑲규격			⑳허가량			㉑반출량			㉒사용량	* 외국물품, 관공물품, 내국물품			「보세공장은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년...월...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 작업기간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p>○ 제22조 및 제24조 개정사항 반영</p>
접수번호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처리기간																																																																																																																																																																														
	완료보고서	1일																																																																																																																																																																														
①보세공장명	②보세구역 부호																																																																																																																																																																															
③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	④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⑤작업장소재지	⑥작업허가기간																																																																																																																																																																															
※ 허가내역																																																																																																																																																																																
⑦허가번호	⑧생산 제품명	⑨규격																																																																																																																																																																														
		⑩수량 (총량)																																																																																																																																																																														
		⑪형태																																																																																																																																																																														
* 붙합 또는 추가 허가분 모두 기재																																																																																																																																																																																
* 반제품 완제품																																																																																																																																																																																
※ 작업결과(제품,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 처리내용)																																																																																																																																																																																
⑫구분	⑬품명	⑭규격																																																																																																																																																																														
		⑮수량 (총량)																																																																																																																																																																														
		⑯근거번호																																																																																																																																																																														
* ㉠구분 보세공장반입, 현장 수출 현장 수입, 현장 폐기 현장 압수도, 기타 장외일시장차 허가장소 반입 * ㉡구분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으로 세관 관장수입(제품, 완제품(잉여물품) 등																																																																																																																																																																																
*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폐기승인번호, 압수도 승인번호, 장외일시장차허가번호 등																																																																																																																																																																																
※ 소요 원재료명세(허가받은 물품에 한한다)																																																																																																																																																																																
⑰구분	⑱품명	⑲규격																																																																																																																																																																														
		⑳허가량																																																																																																																																																																														
		㉑반출량																																																																																																																																																																														
		㉒사용량																																																																																																																																																																														
* 외국물품, 관공물품, 내국물품																																																																																																																																																																																
「보세공장은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년...월...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 작업기간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접수번호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처리기간																																																																																																																																																																														
	완료보고서	1일																																																																																																																																																																														
①보세공장명	②보세구역 부호																																																																																																																																																																															
③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	④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⑤작업장소재지	⑥작업허가기간																																																																																																																																																																															
※ 허가내역																																																																																																																																																																																
⑦허가번호	⑧생산 제품명	⑨규격																																																																																																																																																																														
		⑩수량 (총량)																																																																																																																																																																														
		⑪형태																																																																																																																																																																														
* 붙합 또는 추가 허가분 모두 기재																																																																																																																																																																																
* 반제품 완제품																																																																																																																																																																																
※ 작업결과(제품,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 처리내용)																																																																																																																																																																																
⑫구분	⑬품명	⑭규격																																																																																																																																																																														
		⑮수량 (총량)																																																																																																																																																																														
		⑯근거번호																																																																																																																																																																														
* ㉠구분 보세공장반입, 현장 수출 현장 수입, 현장 폐기 현장 압수도, 타보세구역 반출 기...다 장외일시장차 허가장소 반입 * ㉡구분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으로 세관 관장수입(제품, 완제품(잉여물품) 등																																																																																																																																																																																
*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폐기승인번호, 압수도 승인번호, 장외일시장차허가번호 등																																																																																																																																																																																
※ 소요 원재료명세(허가받은 물품에 한한다)																																																																																																																																																																																
⑰구분	⑱품명	⑲규격																																																																																																																																																																														
		⑳허가량																																																																																																																																																																														
		㉑반출량																																																																																																																																																																														
		㉒사용량																																																																																																																																																																														
* 외국물품, 관공물품, 내국물품																																																																																																																																																																																
「보세공장은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년...월...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 작업기간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p>	<p>[별지 제18호의6서식]</p> <p>(별지 제18호의6서식) &lt;신설&gt;</p> <table border="1" data-bbox="884 403 1503 1273"> <tr> <td colspan="2">입장번호 :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 정정·취하신청(승인)서</td> <td>처리기간 1일</td> </tr> <tr> <td>신청인</td> <td>① 상 호</td> <td></td> </tr> <tr> <td></td> <td>② 주 소</td> <td></td> </tr> <tr> <td></td> <td>③ 성 명</td> <td>④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⑤ 구 분</td>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정정    <input type="checkbox"/> 취하</td> </tr> <tr> <td>⑥ 반출신청번호</td> <td></td> <td>⑦ 반출신청일자</td> </tr> <tr> <td colspan="3">⑧ 정정/취하사유 :</td> </tr> <tr> <td>⑨ 정정/취하항목</td> <td>⑩ 변경 전</td> <td>⑪ 변경 후</td> </tr> <tr> <td colspan="3">* 신고내역, 경리장소, 발 송사유, 신청사유, 즉시 반출일자, 반출신고내역 단번호, 잉여물품명, 대 외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공량), 가액(USD), 비 고 잉여물품 확인자</td> </tr> <tr> <td colspan="2">「관세법」 제253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보세 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위와 같이 정정(취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td> <td>위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과인</span>  귀하</td> </tr> <tr> <td colspan="2">첨부서류 : 1. 잉여물품 관리대장 사본, 2. 정정/취하 증빙자료(세관 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td> <td>수수료 없음</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p>	입장번호 :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 정정·취하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정정 <input type="checkbox"/> 취하		⑥ 반출신청번호		⑦ 반출신청일자	⑧ 정정/취하사유 :			⑨ 정정/취하항목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 신고내역, 경리장소, 발 송사유, 신청사유, 즉시 반출일자, 반출신고내역 단번호, 잉여물품명, 대 외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공량), 가액(USD), 비 고 잉여물품 확인자			「관세법」 제253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보세 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위와 같이 정정(취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과인</span>  귀하	첨부서류 : 1. 잉여물품 관리대장 사본, 2. 정정/취하 증빙자료(세관 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p>○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 신고서 정정 및 취하절차 마련에 따른 서식 신설</p>
입장번호 :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 정정·취하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정정 <input type="checkbox"/> 취하																																		
⑥ 반출신청번호		⑦ 반출신청일자																																	
⑧ 정정/취하사유 :																																			
⑨ 정정/취하항목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 신고내역, 경리장소, 발 송사유, 신청사유, 즉시 반출일자, 반출신고내역 단번호, 잉여물품명, 대 외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공량), 가액(USD), 비 고 잉여물품 확인자																																			
「관세법」 제253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보세 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위와 같이 정정(취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과인</span>  귀하																																	
첨부서류 : 1. 잉여물품 관리대장 사본, 2. 정정/취하 증빙자료(세관 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26호의2서식]</p> <p>(별지 제26호의2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담당부서</td> <td style="width: 15%;">세관과</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b>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신청(허가)서</b></td> <td rowspan="2" style="width: 15%;">처리기간</td> </tr> <tr> <td>담당과장</td> <td></td> </tr> <tr> <td>담당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번호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 일</td> </tr> <tr> <td>연락처(전화)</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① 보세공장명</td> <td>② 보세구역부호</td> <td></td> </tr> <tr> <td>③ 주소</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내용</td>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⑥ 적재(예정)일</td> <td>⑦ 통화</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기내식 적재(Meal Loadin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⑧ 란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⑨ 적재 편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⑩ 기내식 종류 (※ 예시) FC BC YC CC 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⑪ 총 수량    ⑫ 총 금액    ⑬ 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oadin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⑭ 란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⑮ 적재 편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⑯ 적재물품 상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⑰ 수량    ⑱ 총 금액    ⑲ 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⑳ 허가조건</td> <td colspan="3">* 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하기)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적재 후 의일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증명신청서 제출</td> </tr> <tr> <td colspan="2">「관세법」 제143조제1항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기내 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귀인</td> </tr> <tr> <td colspan="3">첨부서류 : 적재신청 상세 내역 1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없음</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종))</td> </tr> </table>	담당부서	세관과	<b>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신청(허가)서</b>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당자		신청번호 :	1 일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소			신청내용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적재(예정)일	⑦ 통화		기내식 적재(Meal Loading)				⑧ 란번호	⑨ 적재 편명	⑩ 기내식 종류 (※ 예시) FC BC YC CC 기타	⑪ 총 수량    ⑫ 총 금액    ⑬ 비고									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oading)				⑭ 란번호	⑮ 적재 편명	⑯ 적재물품 상세	⑰ 수량    ⑱ 총 금액    ⑲ 비고									⑳ 허가조건	* 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하기)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적재 후 의일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증명신청서 제출			「관세법」 제143조제1항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기내 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세관장 귀인		첨부서류 : 적재신청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종))				<p>[별지 제26호의2서식]</p> <p>(별지 제26호의2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담당부서</td> <td style="width: 15%;">세관과</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b>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신청(허가)서</b></td> <td rowspan="2" style="width: 15%;">처리기간</td> </tr> <tr> <td>담당과장</td> <td></td> </tr> <tr> <td>담당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번호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 일</td> </tr> <tr> <td>연락처(전화)</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① 보세공장명</td> <td>② 보세구역부호</td> <td></td> </tr> <tr> <td>③ 주소</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내용</td> <td>④ 대표자 성명</td> <td>⑤ 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⑥ 적재(예정)일</td> <td>⑦ 통화</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기내식 적재(Meal Loadin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⑧ 란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⑨ 적재 편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⑩ 기내식 종류 (※ 예시) FC BC YC CC 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⑪ 총 수량    ⑫ 총 금액    ⑬ 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oadin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⑭ 란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⑮ 적재 편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⑯ 적재물품 상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⑰ 수량    ⑱ 총 금액    ⑲ 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⑳ 허가조건</td> <td colspan="3">* 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하기)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적재 후 다음 날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증명신청서 제출</td> </tr> <tr> <td colspan="2">「관세법」 제143조제1항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기내 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귀인</td> </tr> <tr> <td colspan="3">첨부서류 : 적재신청 상세 내역 1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없음</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종))</td> </tr> </table>	담당부서	세관과	<b>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신청(허가)서</b>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당자		신청번호 :	1 일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소			신청내용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적재(예정)일	⑦ 통화		기내식 적재(Meal Loading)				⑧ 란번호	⑨ 적재 편명	⑩ 기내식 종류 (※ 예시) FC BC YC CC 기타	⑪ 총 수량    ⑫ 총 금액    ⑬ 비고									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oading)				⑭ 란번호	⑮ 적재 편명	⑯ 적재물품 상세	⑰ 수량    ⑱ 총 금액    ⑲ 비고									⑳ 허가조건	* 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하기)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적재 후 다음 날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증명신청서 제출			「관세법」 제143조제1항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기내 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세관장 귀인		첨부서류 : 적재신청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종))				<p>○알기 쉬운 용어 사용</p>
담당부서	세관과	<b>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신청(허가)서</b>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당자		신청번호 :	1 일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소																																																																																																																																																															
신청내용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적재(예정)일	⑦ 통화																																																																																																																																																														
기내식 적재(Meal Loading)																																																																																																																																																																
⑧ 란번호	⑨ 적재 편명	⑩ 기내식 종류 (※ 예시) FC BC YC CC 기타	⑪ 총 수량    ⑫ 총 금액    ⑬ 비고																																																																																																																																																													
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oading)																																																																																																																																																																
⑭ 란번호	⑮ 적재 편명	⑯ 적재물품 상세	⑰ 수량    ⑱ 총 금액    ⑲ 비고																																																																																																																																																													
⑳ 허가조건	* 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하기)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적재 후 의일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증명신청서 제출																																																																																																																																																															
「관세법」 제143조제1항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기내 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세관장 귀인																																																																																																																																																														
첨부서류 : 적재신청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종))																																																																																																																																																																
담당부서	세관과	<b>기내식 적재(하기) 포괄 신청(허가)서</b>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당자		신청번호 :	1 일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소																																																																																																																																																															
신청내용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적재(예정)일	⑦ 통화																																																																																																																																																														
기내식 적재(Meal Loading)																																																																																																																																																																
⑧ 란번호	⑨ 적재 편명	⑩ 기내식 종류 (※ 예시) FC BC YC CC 기타	⑪ 총 수량    ⑫ 총 금액    ⑬ 비고																																																																																																																																																													
기타 품목 적재(Sundry Item Loading)																																																																																																																																																																
⑭ 란번호	⑮ 적재 편명	⑯ 적재물품 상세	⑰ 수량    ⑱ 총 금액    ⑲ 비고																																																																																																																																																													
⑳ 허가조건	* 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하기)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적재 후 다음 날까지 기내식 적재허가 증명신청서 제출																																																																																																																																																															
「관세법」 제143조제1항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기내 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세관장 귀인																																																																																																																																																														
첨부서류 : 적재신청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종))																																																																																																																																																																